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원자력안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(법률 제21382호, 2026.2.19. 공포, 2027.2.20. 시행)됨에 따라 시행령상 해당 조사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방사능오염조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관련 조문 정비(시행령안 별표 7 제10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 7 제10호 중 “감시·평가”를 “감시·평가 및 방사능오염 조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</u> <u>업무</u>(제154조제2항 관련) 1. ~ 9. (생략) 10.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,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<u>감시·평가</u>에 관한 사항	<u>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</u> <u>업무</u>(제154조제2항 관련)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,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<u>감시·평가 및 방사능오염 조사</u>에 관한 사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	
연 락 처	(02) 397 - 7372